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9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용, 조경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하여 쇄골재용이 아닌 건축용, 조경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음.

또한, 현행 석재채취업 등의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적절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석재의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거나, 계승·발전시킬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는 ‘전통 석재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는 복잡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방법의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석재관련 사업자,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 등의 참여유도 및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골재채취업의 석재채취업 등록 간주 규정 명확화

개정안은 골재채취법령 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중 하나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의 용도 중 “쇄골재용”의 석재채취업에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림골재채취업”은 「골재채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의 종류 중 하나로,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법률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석재채취업자 및 가공업자의 폐업신고 규정 마련

개정안은 석재채취업자 및 석재가공업자의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등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폐업신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석재채취업자등이 재등록한 경우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한과 폐업신고 전 내려진 행정처분의 유효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처분 또는 그 효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골재채취법」에서도 재등록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그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 우수사업자 및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제를 선정제로 변경

개정안은 우수사업자 및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전환하여 조건과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증 부담 완화를 통해 석재관련 사업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기존의 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인증”이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선정”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품·서비스의 품질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인증제도의 본질적 사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우수사업자 선정 취소 등 청문절차 마련

현행법은 행정처분 중 석재채취업과 석재가공업의 등록취소 시에만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사업자 및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개

정안은 선정)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취소,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취소 시에는 청문 규정이 없어 처분 당사자의 방어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은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하에서도 청문이 가능함.

그러나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정도가 크거나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청문을 필요절차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사업자 등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주요내용에서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청문절차 마련의 한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안 제23조의2 각 호의 청문대상에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안 제23조의2제1호(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로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23조의2는 청문의 실시주체를 “산림청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개진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를 청문의 주체로서 명확히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반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청문실시 대상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와 우수사업자 및 전통 석재제품 선정취소권자는 산림청장이고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권자는 시장등이므로, 안 제23조의2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등”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등”으로 수정이 필요함.

셋째, 법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약칭에 따른 법률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제9조제3항에서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의 업을 “석재채취업등”으로 약칭하고 제11조제1항에서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로 표현하고 있으나, 안 제23조의2제1호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칭을 반영하여 “석재채취업 등”을 “석재채취업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지정 및 선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필요절차로 규정한 경우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등의 입법례가 있음.

마. 부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우수사업자 및 전통 석재제품 등의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고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제도변경에 대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시행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 골재채취업의 석재채취업 등록 간주 규정 중 개정안의 “산림골재채취업”은 「골재채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의 종류 중 하나로,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법률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통 석재제품의 선정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전통석공예 기술이 소유자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전통 석재제품 선정·인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굴·추천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주요내용 중 개정 조문에 미반영된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청문대상에 포함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선정 기준 마련 및 하위법령의 정비를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골재채취업의 석재채취업 등록 간주 규정 중 개정안의 “산림골재채취업”은 「골재채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의 종류 중 하나로,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법률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통 석재제품의 선정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전통석공예 기술이 소유자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전통 석재제품 선정·인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굴·추천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주요내용 중 개정 조문에 미반영된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청문대상에 포함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선정 기준 마련 및 하위법령의 정비를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산림골재채취업을 골재채취업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산림에서 채취하는 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1항단서).

나. 전통 석재제품 선정·인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준에 적합한 해당 지역의 제품이나 명인을 발굴하여 산림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안 제16조제1항후단 신설 및 같은 조 제8항).

다.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청문대상에 추가함(안 제23조의2제1호 신설).

라. 청문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며, 약칭에 따른 법률용어를 통일하는 등 체계와 자구를 정리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의2).

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안 부칙).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단서 중 “산림골재채취업”을 “골재채취업(「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산림에서 채취하는 업에 한정한다)”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우수사업자의 선정을”을 “우수사업자로 선정”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청”을 “신청과 추천”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당 지역의 전통 석재제품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을 발굴하여 산림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안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은”을 “또는 시장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안 제23조의2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석재채취업 등의”를 “석재채취업등의”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석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① 석채산업 중 석채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석채취업등의 등록 등) ① ----- ----- ----- ----- ----- ----- ----- ----- ----- ----- ----- ----- -----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호의 석채중 왜골재용 석채에 한하여-----	제9조(석채채취업등의 등록 등) ① ----- ----- ----- ----- ----- ----- ----- ----- ----- ----- ----- ----- ----- -골재채취업(「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산림에서 채취하는 업에

	----- -----.	<u>한정한다</u>)----- ----- ----- ----- <u>한정</u> <u>하여</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4조(<u>우수사업자 인</u> <u>증</u>)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가공기 술이 우수한 석재 사업자를 우수사업 자로 <u>인증</u> 할 수 있 다.	제14조(<u>우수사업자 선</u> <u>정</u>) ① ----- ----- ----- ----- <u>선정</u> ----- --.	제14조(<u>우수사업자 선</u> <u>정</u>)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u>인증</u> 을 받으려는 석재 사업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림 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② ----- <u>우수사업자의 선정</u> <u>을</u> ----- ----- ----- ----- -----.	② ----- <u>우수사업자로 선정</u> ----- ----- ----- ----- -----.
③ 산림청장은 제1 항에 따라 <u>우수사업</u>	③ ----- ----- <u>선정된 우</u>	③ ~ ⑧ (개정안과 같음)

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
다)에 대하여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
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
닌 석재사업자는 인
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2
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
자에게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인증
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

수사업자-----
----- “우수
사업자”-----

----- 선정
서-----
--- 우수사업자 표
시-----
---.

④ 우수사업자----
----- 우
수사업자 표시 ---

-----.

⑤ 제1항에 따른 선
정의 유효기간은 선
정을 받은 날부터 3
년으로 하고, 선정
의 유효기간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⑥ ----- 우수
사업자-----
--- 선정기준----

	<u>신설></u>	<u>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당 지역의 전통 석재제품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을 발굴하여 산림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u>
② 누구든지 <u>인증·인정을</u>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u>인증·인정 표시</u>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u>선정·인정을</u> ----- ----- -- <u>선정·인정 표시</u> ----- ----- ----- -----.	② ~ ⑦ (개정안과 같음)
③ <u>인증·인정을</u>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u>선정·인정</u> ----- ----- ----- ----- ----- --.	
④ 제1항에 따른 <u>인증</u> 의 유효기간은 <u>인증</u> 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u>인정의</u>	④ ----- <u>선정의</u> ----- <u>선정을</u> ----- -----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인증·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인정을 받은 경우

2. (생략)

3.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인

--선정·인정----

-----.

⑤ ----- 선정
· 인정-----

--- 선정·인정---
-----.

---- 선정·인정--
-----.

1. -----

선정·인정-----

2. (현행과 같음)

3. 선정·인정기준-

⑥ ----- 선

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하면 그 인증·인정
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⑦ 인증·인정의 신
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정·인정이 -----

----- 선정·인정
을 -----.

⑦ 산림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선정·인
정된 전통 석재제품
을 우선적으로 제12
조제1항에 따라 지
원 할 수 있으며, 국
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
통 석재제품을 구매
할 경우 제1항에 따
라 선정된 전통 석
재제품을 우선적으
로 구매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⑧ 선정·인정의 신
청-----

-----.

⑧ -----신
청과 추천-----

<u><신 설></u>	제23조의2(청문) 산림청 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취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의 선정 취소 3.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정·인정 의 취소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 흥지구의 지정 취 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3조의2(청문) ----- -----또는 시장등은----- ----- ----- ----- -----. 1.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 -----석재채취업 등의----- 3. (개정안 제2호와 같음) 4. (개정안 제3호와 같음) 5. (개정안 제4호와 같음) 부칙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을 “골재채취업(「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산업에서 채취하는 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호의 석재 중 쇄골재용 석재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석재채취업등의 폐업) ① 석재채취업자등이 그 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해당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1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석재채취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

게 승계된다.

④ 시장등은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우수사업자 인증)”을 “(우수사업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사업자의 인증을”을 “우수사업자로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를 “선정된 우수사업자”로,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서”를 “선정서”로,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우수사업자는 우수사업자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표시”를 “우수사업자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기준”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증사업자에 대하여”를 “우수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를 “(우수사업자 선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의 제목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이나”를 “선정이나”로,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인정을”을 “선정·인정을”로, “인증·인정 표시”를 “선정·인정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의”를 “선정의”로, “인증을”을 “선정을”로,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인증·인정”을 각각 “선정·인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인정기준”을 “선정·인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인정이”를 “선정·인정이”로, “인증·인정을”을 “선정·인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신청”을 “신청과 추천”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당 지역의 전통 석재제품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을 발굴하여 산림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인정된 전통 석재제품을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 석재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 석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선정취소
4.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정·인정의 취소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

제26조제3호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표시”를 “우수사업자 표시”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인증·인정 표시”를 “선정·인정 표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 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 다.	① ----- ----- ----- ----- ----- ----- ----- ----- ----- 골재채취업(「골재채취법」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산림에서 채취하는 업에 한정하 다)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 1호의 석재 중 왜골재용 석재에 한정하여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생 략)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등은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략)

<신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의2(석재채취업등의 폐업)

① 석재채취업자등이 그 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해당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1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석재채취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④ 시장등은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 과하는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 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 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 청장은 석재의 채취·가공기술 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 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업자 선정) ① ---- ----- -----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② -----우수사업자 로 선정----- ----- -----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 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 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 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	③ -----선 정된 우수사업자----- -----“우수사업자”----- ----- -----선정 서-----우수사

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

업자는 우수사업자 표시-----
-----.

④ 우수사업자-----
----우수사업자 표시 -----
-----.

⑤ 제1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⑥ -----우수사업자-----
-----선정기준-----

-----.

⑦ -----우수사업자에게

-----.

⑧ -----선정-----

-----.

제15조(우수사업자 선정의 취소)

① -----우수사업자-----

-----선정-----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생략)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누구든지 인증·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

-----.
-----선정-----
-----.

1. -----
----- 선정-----
2. (현행과 같음)
3. -----선정-----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선정 등)

① -----

-----선정이나 -----
-----“선정·인정”-----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당 지역의 전통 석재제품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을 발굴하여 산림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선정·인정을 -----
-----선

증·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인증·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인정을 받은 경우

2. (생략)

3.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정·인정 표시-----
-----.

③ 선정·인정-----

-----.

④ -----선정의-----
-----선정을-----

-----선정·인정-----

-----.

⑤ -----선정·인정-----

-----선정·인정-----
-----.
-----선정·인정-----
-----.

1. -----
-----선정·인정-----

2. (현행과 같음)

3. 선정·인정기준-----

⑥ -----선정·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⑦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선정·
인정을 -----.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
정·인정된 전통 석재제품을 제
1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이 전통 석재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통
석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선정·인정---신청과 추천-

-----.

제23조의2(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
취업등의 등록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

	<u>업자의 선정취소</u> 4.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정· <u>인정의 취소</u>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 <u>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u>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u>인증</u> 을 받은 자	3. ----- ----- ----- <u>선정</u> -----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u>인 증표시</u> 또는 이와 유사한 표 시를 한 자	4. ----- <u>우 수사업자 표시</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제28조(과태료)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u>인증·인정</u> 을 받은 자	2. ----- ----- <u>선정·인정</u> -----.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u>인</u>	3. ----- <u>선</u>

<u>증·인정</u>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u>인증·인정 표시</u>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생략) ② (생략)	<u>정·인정</u>----- -----<u>선정·인정</u> <u>표시</u>-----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